

1. 개정이유

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21294호, 2025. 12. 30. 공포, 2026. 7. 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상 빈 점포의 기준 규정
(안 제12조의2)

나. 빈 점포 활용 용도를 위한 장소 규정(안 제12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각 부처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: 추진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예정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빈 점포의 활용)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”란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점포를 말한다.

제12조의3(빈 점포 활용의 용도)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.

1. 구매, 물류,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장소
2.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·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장소
3.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2(빈 점포의 활용)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”란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점포를 말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3(빈 점포 활용의 용도)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.</u> <u>1. 구매, 물류,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장소</u> <u>2.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·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장소</u> <u>3.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</u>